

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(제15조제8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의 기간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- 2)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9조제4항	지정 취소	
나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9조제4항	시정명령	지정 취소
다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9조제4항	시정명령	지정 취소
라.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4항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